

연구실안전관리규정 신·구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전관리규정 및 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(이하 “연안법” 이라 한다)’ 에 근거하여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,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·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생략)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연구실” 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·장비·연구실험실·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전관리규정 및 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(이하 “연구실안전법” 이라 한다)’ 에 근거하여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,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및 인명과 재산을 보호·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현행과 동일)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연구실” 이라 함은 대학·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·장비·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·실습실·실험준비실을 말한다.</p> <p>2. “연구활동” 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(실험 실습 등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 <p>3. (현행과 동일)</p>	<p>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’ 의 약칭을 기존 “연안법” 에서 법규 정식 약칭인 “연구실 안전법” 으로 변경</p> <p>연구활동종사자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</p> <p>기존 “연구실” 에 대한 정의를 연구실안전법에서 명시한 연구실의 정의로 변경</p> <p>연구실안전법에서 신설된 “연구활동” 의 정의반영하여 “2.” 신설</p> <p>“2.” 를 “3.” 로 항목 조항 변경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3. “물질안전보건자료”라 함은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 물질의 명칭, 성분, 물리화학적 특성, 유해·위험성, 폭발이나 누출시에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5. “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”라 함은 연구실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고 본 대학 각 학과 및 센터의 부서장이, 그 조직을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6. “연구실안전관리자”라 함은 <u>안전관리주관부서</u>에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정책사항 및 대 관청업무를 수행하는 “<u>연구실전임안전관리자</u>”와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에서 학과/센터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“<u>연구실학과안전관리자</u>”를 말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7. “연구실책임자”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및 책임이 있는 자로서, 해당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를 시행하고 <u>그 결과를</u> 연구실책임부서에 통보한다.</p>	<p>4. “물질안전보건자료”라 함은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 물질의 명칭, 성분, 물리화학적 특성, 유해·위험성, 폭발이나 누출시에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말한다.</p> <p>5. (현행과 동일)</p> <p>6. “연구주체의 장”이라 함은 본 대학의 총장을 말한다.</p> <p>7. “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”라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팀을 말하며, “연구실 안전관리책임부서”라 함은 연구실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고 본 대학 각 학과 및 센터의 부서장이, 그 조직을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8. “연구실안전관리자”라 함은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정책사항 및 대 관청업무를 수행하는 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”와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에서 학과/센터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“학과안전관리자”를 말한다.</p> <p>9. “연구실안전관리사”란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0. “연구실책임자”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및 책임이 있는 자로서, 해당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를 시행한다.</p>	<p>“3.”를 “4.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물질안전보건자료에 “유해·위험성” 신설</p> <p>“4.”를 “5.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연구실안전법에서 정의한 “연구주체의 장”을 “6.”에 신설</p> <p>기존에 누락된 “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”에 대한 정의반영하여, “5.”를 “7.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기존 “안전관리주관부서”를 본 규정의 내용에 맞게 “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”로써 변경</p> <p>기존 “연구실전임안전관리자”를 연구실안전법에서 명시하는 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”로써 변경</p> <p>기존 “연구실학과안전관리자”를 “학과안전관리자”로써 변경</p> <p>“6.”를 “8.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연구실안전법에서 신설된 “연구실안전관리사”의 정의 “9.” 신설</p> <p>“7.”를 “10.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기존에 명시한 연구실책임부서에 연구실책임자의 안전업무 결과 통보에 대한 부분을 삭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8. “연구실안전담당자”라 함은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자로서 연구실 및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9. (생략)</p> <p>10. (생략)</p>	<p>11. “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”라 함은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자로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2. (현행과 동일)</p> <p>13. (현행과 동일)</p>	<p>기존 “연구실안전담당자”를 연구실안전법에서 명시한 용어인 “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”로 변경</p> <p>“8.”를 “11.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“9.”를 “12.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“10.”를 “13.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
<p>11. “정밀안전점검”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관련규정 기준 및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·평가를 말한다.</p> <p>12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14. “정밀안전진단”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관련규정 기준 및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·평가를 말한다.</p> <p>15. (현행과 동일)</p> <p>16. “유해인자”라 함은 화학적·물리적·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.</p> <p>17. 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”이라 함은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8. “개인보호장구”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착용하는 장갑, 마스크, 가운, 캡, 앞치마, 고글 등의 보호장비를 말한다.</p>	<p>기존 “정밀안전점검”을 연구실안전법에서 명시한 용어인 “정밀안전진단”으로 변경</p> <p>“11.”를 “14.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“12.”를 “15.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“유해인자”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근거로 “16.”신설</p> <p>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”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근거로 “17.”신설</p> <p>연구실에서 사용하는 “개인보호장구”에 대하여 “18.”신설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조직과 직무</p> <p>제4조(안전관리위원회)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정책적인 사항은 본 대학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 <p>제5조(학과안전관리위원회) ① 각 학과 및 센터의 안전업무를 위하여 <u>안전관리위원회</u> 하부에 학과별 학과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학과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각 학과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 2. 연구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. 연구실 안전관리의 주요사항 및 대학안전관리위원회 상정 안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(생략) 5. (생략)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조직과 직무</p> <p>제4조(대학안전관리위원회) ①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정책적인 사항은 본 대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 <p>② 대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③ 대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.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.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.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.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.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<p>제5조(학과안전관리위원회) ① 각 학과 및 센터의 안전업무를 위하여 <u>대학안전관리위원회</u> 하부에 학과별로 학과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과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 2. 학과별 연구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. 학과별 연구실 안전관리의 주요사항 및 대학안전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(현행과 동일) 5. (현행과 동일) 	<p>기존 “안전관리위원회” 로 명시한 부분을 “학과안전관리위원회” 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“대학안전관리위원회” 로 변경</p> <p>대학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 외에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하여 “제4조” 에 “②” 항의 구성원과 “③” 항의 심의사항을 신설</p> <p>“①” 항에서 기존 “안전관리위원회” 를 “대학안전관리위원회” 로 변경</p> <p>기존 “1.” 항목상에 문맥정리를 위하여 “각” 과 “의 총괄” 부분 삭제</p> <p>기존 “2.” 항목의 앞부분에 “학과별” 을 신설</p> <p>기존 “3.” 항목의 앞부분에 “학과별” 을 신설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6조(조직 및 직책) ① 연구실 안전관리의 총괄을 위하여 대학본부에 <u>안전관리주관부서</u>를 두며, 연구실전임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.</p> <p>② 각 학과에는 연구실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를 두며, 학과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.</p> <p>③ 각 연구실에는 연구실책임자 하에 연구실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며 <u>연구실안전담당자</u>를 선임한다.</p> <p>제7조(안전관리주관부서) 본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각종 표준 <u>매뉴얼</u> 작성 지원 3. (생략) 4. <u>연구실안전관리세칙에 정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</u> 5. (생략) 6. <u>연구종사자</u> 보험가입 및 보상에 관한 지원사항 7. <u>연구종사자</u>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. (생략) 9. (생략) 	<p>제6조(조직 및 직책) ① 연구실 안전관리의 총괄을 위하여 대학본부에 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를 두며,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선임한다.</p> <p>② 각 학과는 연구실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로서 학과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.</p> <p>③ 각 연구실에는 연구실책임자 하에 연구실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며 <u>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</u>를 선임한다.</p> <p>제7조(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) 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는 본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동일) 2. 각종 표준 <u>매뉴얼</u> 작성 지원 3. (현행과 동일) 4. <u>대학안전관리위원회</u>에서 의결된 사항 5. (현행과 동일) 6. 연구<u>활동</u>종사자 보험가입 및 보상에 관한 지원사항 7. 연구<u>활동</u>종사자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. (현행과 동일) 9. (현행과 동일) 	<p>“①”항에서 기존 “안전관리주관부서”를 “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”로 변경</p> <p>“②”항에서 학과가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문구 정정(기존 “에”와 “를 두며” 삭제)</p> <p>“③”항에 기존 “연구실안전담당자”를 “<u>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</u>”로 변경</p> <p>“제7조”에서 기존 “안전관리주관부서”를 “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”로 변경하고, 해당내용의 주체를 명시하기 위해 “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” 표기</p> <p>“2.”항목의 기존 매뉴얼을 표준어인 “매뉴얼”로 변경</p> <p>“4.”항목의 문구정리 및 정식 위원회명인 “<u>대학안전관리위원회</u>”로 표기</p> <p>“6.”항목에 기존 “연구종사자”를 연구실안전법 용어인 “<u>연구활동종사자</u>”로 변경</p> <p>“7.”항목에 기존 “연구종사자”를 연구실안전법 용어인 “<u>연구활동종사자</u>”로 변경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8조(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) 각 학과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각 <u>학과 연구실안전관리자</u> 및 <u>연구실안전담당자</u> 선임·보고 (신설)</p>	<p>제8조(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) 각 학과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각 <u>학과안전관리자</u> 및 <u>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</u> 선임·보고</p> <p>제9조(연구주체의 장)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·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.</p> <p>제10조(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)</p> <p>①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다.</p> <p>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</p> <p>2.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</p> <p>3.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·조언</p> <p>4.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</p> <p>5.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1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</p> <p>2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</p>	<p>“2.” 항목의 기존 “학과 연구실안전관리자 및 연구실안전담당자” 를 “<u>학과안전관리자</u> 및 <u>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</u>” 로 변경</p> <p>“제9조” 에 “<u>연구주체의 장</u>” 을 신설하며 역할명시</p> <p>“제10조” 에 “<u>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</u>” 를 신설하며 연구실안전법의 내용에 의거하여, “①” 항에 역할과 “②” 항에 업무 및 “③” 항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사항 명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u>제9조(연구실 책임자)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 또한,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서,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에 통보한다. 연구실안전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실 책임자가 겸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</u></p>	<p><u>제11조(연구실책임자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</u></p> <p><u>③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구실내의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안전 책임에 관한 사항 2.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사항 3.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4.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6.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사항 	<p>“제9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 기존 “연구실책임자”의 책임과 역할을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하여, “①”항에 연구실책임자 지정사항과 “②”항에 책임과 권한 및 “③”항에 연구실 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사항 및 역할로 구분하여 명시</p>
<p><u>제10조(연구실 안전담당자) 연구실안전담당자는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또한, 연구실안전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에 통보한다.</u></p>	<p><u>제12조(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)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.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.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.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.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	<p>“제10조”를 “제12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 기존 “연구실 안전담당자”의 이름과 역할을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“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”로 변경 및 세부역할로 변경하여 명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1조(연구활동종사자) 연구활동종사자는 <u>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실안전 담당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,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2조(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) 연구활동종사자, 연구실안전담당자, 연구실안전관리자, <u>연구실안전관리부서장</u> 등 본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연구활동종사자)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구실 안전교육·훈련 이수 2.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.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4.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<p>제14조(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) 연구활동종사자,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, 연구실안전관리자,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 등 본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/p>	<p>“제11조”를 “제13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 기존 “연구활동종사자”의 역할을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세부역할로 변경하여 명시</p> <p>“제12조”를 “제14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 기존 “연구실안전관리부서장”이 주관부서장과 책임부서장에서 혼동될 수 있어 “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”으로 명기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안전관리</p> <p>제13조(안전점검) ① 안전점검에는 일상점검, 정기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이 있고 일상점검은 각 연구실에서 시행하며, <u>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일일 순회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,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한다.</u></p> <p>②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안전점검 미비사항에 즉시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그 결과를 <u>안전관리주관부서</u>에 통보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4조(안전교육·훈련) 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·훈련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안전교육·훈련 미 이수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.</p> <p>② 교육·훈련 시간, 내용은 <u>안전관리부서 및 관련법령</u>에 따라 실시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안전관리</p> <p>제15조(안전점검) ① 안전점검에는 일상점검, 정기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이 있고 일상점검은 각 연구실에서 시행하며, 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일상점검, 정기점검,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한다.</u></p> <p>②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안전점검 미비사항을 즉시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그 결과를 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에 통보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16조(안전교육·훈련) 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·훈련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안전교육·훈련 미 이수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. <u>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에 관한 사항은 [별지 1]에 따른다.</u></p> <p>② 교육·훈련 시간, 내용은 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의 교육계획 및 연구실안전법</u>에 따라 실시한다.</p>	<p>“제13조”를 “제15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 “①”항에 기존 “안전관리주관부서”를 “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”로 <u>정정</u>하며, “일일 순회 모니터링”을 연구실안전법에서 명시한 용어인 “<u>일상점검</u>”으로 변경</p> <p>“②”항에 기존 “안전관리주관부서”를 “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”로 <u>정정</u></p> <p>“제14조”를 “제16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 “①”항에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을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“[<u>별지 1</u>]”에 표기하며 해당 내용 신설하여 명시</p> <p>“②”항에 기존 “안전관리부서 및 관련법령”부분을 “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의 교육계획 및 연구실안전법</u>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③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각 부서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·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<u>안전관리주관부서</u>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제15조(안전보고)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각 부서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실적 및 현황 등의 실적보고서를 <u>안전관리주관부서</u>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6조(생략)</p> <p>제17조(안전표식) <u>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.</u></p>	<p>③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각 부서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·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공지한 기간 내 안전교육·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페널티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7조(안전보고)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각 부서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실적 및 현황 등의 실적보고서를 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(현행과 동일)</p> <p>제19조(안전표식) <u>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,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, 주의, 경고,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표지[별지 2]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·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20조(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)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[별지 3]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.</p>	<p>“안전관리주관부서”를 “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”로 변경</p> <p>“④”항을 신설하여 교내 시행중인 “<u>안전교육 미이수자 페널티제도</u>”를 명문화</p> <p>“제15조”를 “<u>제17조</u>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“안전관리주관부서”를 “<u>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</u>”로 변경</p> <p>“제16조”를 “<u>제18조</u>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“제17조”를 “<u>제19조</u>”로 항목 조항 변경 기존 “(안전표식)”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주체 및 표식의 대상을 명시함과 동시에 [별지 2]를 신설하여 세부화</p> <p>“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” 신설하며 “[별지 3]”을 첨부하여 연구실 유형 및 특성별 안전수칙 내용 반영하여 “제20조” 신설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8조(위험물,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)</p> <p>① 위험물 및 유해물의 보관·저장 장소는 <u>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</u>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위험물 및 유해물을 저장·조작·처리하는 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.</p> <p>② 위험물, 유해물의 반입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위해정보 및 안전관련정보를 납품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, <u>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</u>는 해당 정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위험물, 유해물의 사용·처리·관리 등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따라야 하며, 관련하여 미비사항 등 문제가 있을 시에는 <u>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</u>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1조(위험물,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)</p> <p>① 연구실책임자는 위험물 및 유해물의 보관·저장 장소를 선정할 시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위험물 및 유해물을 저장·조작·처리하는 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.</p> <p>② 연구실책임자가 위험물, 유해물의 반입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위해정보 및 안전관련정보를 납품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,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은 해당 정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위험물, 유해물의 사용·처리·관리 등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따라야 하며, 관련하여 미비사항 등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및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동일)</p>	<p>“제18조”를 “제21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“①”항에서 해당 주체인 “연구실책임자”를 명시하며 문맥상 흐름을 위해 “를 선정할 시”를 신설하고, 승인의 주체를 “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”가 아닌 “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”으로 변경하여 구체화</p> <p>“②”항에 해당 주체인 “연구실책임자”를 명시하며, 승인의 주체를 “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”가 아닌 “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”으로 변경하여 구체화</p> <p>“③”항에 보고 대상을 “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”가 아닌 “연구실책임자” 및 “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”으로 변경하여 구체화</p>
<p>제19조(보호구 착용) 연구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(개인보호장구 착용)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연구개발활동 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</p>	<p>“제19조”를 “제22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기존 “(보호구 착용)” 명목을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명시한 용어인 “(개인보호장구 착용)”으로 변경하며, 대상주체인 연구활동종사자를 명시하고 해당 내용을 명목에 맞게 수정변경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0조(안전사고 예방 및 준수)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안전장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연구에 임하여야 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유해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일과 시간 후에 계속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알리고 1인 이상이 상주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23조(안전사고 예방 및 준수)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구 등을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연구에 임하여야 한다.</p> <p>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(현행과 동일)</p> <p>6. (현행과 동일)</p> <p>7. 유해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일과 시간 후에 계속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에 알리고 1인 이상이 상주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.</p>	<p>“제20조”를 “제23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 문맥상 “각 호의” 문구를 신설</p> <p>기존 “안전보호구”를 “개인보호장구”로 변경</p> <p>기존 보고대상자인 “안전담당자”의 대상이 모호하였으며 책임소지의 권한을 승격시키기 위해 “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”으로 변경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1조(사고조사 및 보고) ① 경미한 사항에 대한 내부 사고보고는 본 대학 ‘안전관리 규정’의 사고보고서(서식1)에 의거 보고하고, 중대 및 인명사고에 대한 외부보고는 연구실사고 조사표(서식1)에 따라 보고한다.</p> <p>②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해야하며,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한다.</p> <p>③ 사고즉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조사표(서식2)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, 조치내용을 안전관리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 (단, 인명사고시 관련양식에 의거 협조전으로 안전관리주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보고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가 진다)</p> <p>③ 기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안전관리규정 및 각종 매뉴얼 등에 근거하여 조치한다.</p>	<p>제24조(사고보고) 1.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.</p> <p>2.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과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에 사고 상황을 통보한다.</p> <p>3.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.</p> <p>4.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[별지 4]의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생현황을 교내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.</p> <p>5.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25조(사고조사)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내용을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,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되며,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“제21조”를 “제24조~제25조”로 항목 세부 구분 및 조항 변경</p> <p>기존 “(사고조사 및 보고)” 항목이 관련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 “(사고보고)” 및 “(사고조사)”로 구분하여 명시 및 내용 재정리</p> <p>“1.” 항목에 사고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책임자 사고보고 당위성 명시</p> <p>“2.” 항목에 연구실책임자의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과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에 사고상황 통보 당위성 명시</p> <p>“3.” 항목에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상황 보고 당위성 명시</p> <p>“4.” 항목에 개정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“기관 사고보고 기준” 및 “[별지 4]의 사고조사표” 명시</p> <p>“5.” 항목에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방법 명시</p> <p>“①” 항에 사고발생시 사고조사 주체인 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”의 역할과 임무 명시</p> <p>“②” 항에 사고조사시 “연구실책임자”의 역할 명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(신설)	<p>제26조(후속조치) ①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[별지 5] 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, 재발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제27조(연구실 사용제한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중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밀안전진단 실시 2. 유해인자의 제거 3.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4. 연구실의 사용금지 5. 연구실의 철거 6. 그 밖에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중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<p>② 연구활동중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연구활동중사자에 대하여 그 조치의 결과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	<p>“제26조” 를 신설하여 “①” 항에 사고 발생 후 “[별지 5] 의 사고보고서” 작성주체 및 제출대상 명시</p> <p>“②” 항에 사고 재발방지 확인사항 명시</p> <p>“제27조” 를 신설하며 연구실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실에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시 역할별 임무와 책임사항 반영</p>

현행 (신설)	개정(안)	비고
	<p>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28조(사고발생시 행동요령)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. 2.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. 3.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. 4. 소방서, 경찰서,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. 5.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. <p>제29조(연구실사고 유형별 대처요령) 연구실사고 유형별 사고상황에 따라 [별지 6]에 의거하여 조치한다.</p>	<p>“제28조”를 신설하여 사고발생시 일반 행동요령에 대하여 명시</p> <p>“제29조”를 신설하여 사고 유형별 대처방안에 대하여 “[별지 6]”을 신설하여 세부적으로 명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2조(안전관리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책임자는 안전관리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,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집행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후 집행결과를 안전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30조(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,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집행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후 집행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인건비 총액의 1% 이상 2% 이하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에 반영한다.</p>	<p>“제22조”를 “제30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 기존 “(안전관리비)” 명목에 해당 항목의 내용을 포괄하기 위하여 “계상 및 사용”을 신설명시</p> <p>“안전관리주관부서”를 “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”로 변경</p> <p>“③”항 신설하여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“대학”의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비율을 명문화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③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연구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.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·유지 및 보수 5. (생략) 6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7. 그 밖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(신설) 	<p>④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동일) 2. (현행과 동일) 3. 연구실 안전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4.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·유지 및 보수와 안전검사 비용 5. (현행과 동일) 6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및 지적사항 환경개선 비용 7.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8. 실험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소요 비용 9.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관련 여비 및 회의비 10.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비용 11.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12. 연구실안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13.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	<p>“③”를 “④”로 항목 조항 변경</p> <p>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“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”을 근거로 안전관리비 용도 신설 및 세부 명시</p> <p>“3.” 항목에 “연구활동종사자”에 대한 전문교육 사항 신설</p> <p>“4.” 항목에 “안전검사 비용” 사항 신설</p> <p>“6.” 항목에 점검 “지적사항 환경개선 비용” 신설</p> <p>“7.~12” 항목에는 기존 대비 “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”에서 누락되거나 없던 내용들 신설</p> <p>“13.” 항목에 해당 규정의 대상인 “연구실”을 문맥상에 신설하여 명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3조(건강관리) ① 본 대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, 바이러스, 소음, 분진, 방사선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본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및 상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 보험가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p> <p>③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각 부서의 보험가입대상자 및 위해물질정보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24조(준용)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령 및 본 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.</p>	<p>제31조(건강검진)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,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따른다.</p> <p>제32조(보험가입)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따른다.</p> <p>제33조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 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 목록]</p> <p>[별지 1]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[별지 2]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 [별지 3]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[별지 4] 연구실 사고조사표 [별지 5] 연구실 사고보고서 [별지 6] 연구실사고 유형별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</p>	<p>“제23조”를 “제31조~제32조”로 항목 세부 구분 및 조항 변경</p> <p>기존 “(건강관리)” 항목의 내용상 연구실안전법에서 명시한 건강검진 내용과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, “(건강검진)”과 “(보험가입)”으로서 별도로 각각 구분 및 내용정리하여 명시. 각 항목별 내용은 연구실안전법 차용</p> <p>“제24조”를 “제33조”로 항목 조항 변경 기존 “세칙”을 본 “규정”으로 변경</p> <p>본 규정에 명시된 별지 내용들을 목록화하여 명시</p>